

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

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
정관 일부 개정 사항을 보고 드림

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정관) ②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정관 현황

- 정관명칭 :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
- 구 성 : 총 7장 39개조 및 부칙

정관 개정사항

-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감사 변경
 - 「창의행정 전담조직 신설계획」(서울시 조직담당관-398호, 2023.1.9.)에 따른 연구원 당연직 감사(前 시정연구담당관) 소속부서와 부서장의 명칭 변경
 - 서울시 지도·감독부서의 부서명과 부서장의 명칭이 시정연구담당관에서 창의행정담당관으로 변경
 - 서울시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당연직 감사가 변경될 경우 정관의 변경 없이도 반영되도록 당연직 감사 명칭을 '서울특별시 지도감독부서의 장'으로 개정
 - 당연직 임원(감사) 변경 내역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당연직 이사	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	(현행과 동일)
당연직 감사	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	서울특별시 지도감독부서의 장

- 이사회 의결 : 제22차 정기이사회(2023. 3. 9.)에서 원안 가결

향후 계획

- 시의회 보고 및 서울시 승인 요청
- 서울시장 승인 후 정관 효력 발생

붙임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붙임.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임원의 임면) ① 임원은 제8조의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원장, 이사장, 선임직 이사·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단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2.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<p>③ 감사 2명 중 1인은 서울특별시 <u>시정연구담당관</u>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임원의 임면) ① 임원은 제8조의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원장, 이사장, 선임직 이사·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단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2.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<p>③ 감사 2명 중 1인은 서울특별시 <u>지도감독부서의 장</u>으로 한다.</p>
<p>〈신 설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 (2023. 3. 00.)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</p>